

2020. 5. 7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5월 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예방과

예방과장	김 시 철	3706-1500
예방팀장	이 원 석	3706-1510
담 당 자	김 성 문	3706-1511
관련 홈페이지 (서울시웹하드)	119webhard.eseoul.go.kr ‘건축공사장 화재사례’ (ID:seoulpress/PW:fire0119)	

사진있음 영상있음 매수 : 3매

서울시,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현장점검 실시

- 건축공사장 ‘화재예방 긴급현장점검’ 오는 5월 8일까지 긴급 실시
- 관계자 화재예방 교육, 용접·용단 화기취급 안전, 임시소방시설 점검 등 실시
-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화재안전조치 의무 강화된 화재예방조례 준수 당부

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내 연면적 2,000㎡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‘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 점검’을 1차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현장점검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중점사항으로 ▶ 건축공사장 관리책임자(현장소장)에 대하여 지난 ’18년 1월 4일부터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‘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’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, ▶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·용단 작업 시에는 현장 안전 관리책임자 입회·감독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하여 작업하도록 지

도한다.

- 용접·용단 작업은 건축공정 70% 이상일 때 주로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건물 내·외장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 시기에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도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진다.

□ 또한,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,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점검 한다.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접·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는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□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“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·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□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23명의 인명피해(사망3, 부상20명)가 발생했다. 연도별로 '17년 165건, '18년 161건, '19년 126건이 발생했으며, 지난해 건축공사장 화재는 '18년 대비 35건이 줄었다.

※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 화재발생 현황

구 분	화재	인명피해(명)		
		소계	사망	부상
계	452	23	3	20
2019년	126	7	2	5
2018년	161	5	0	5
2017년	165	11	1	10

-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별로 부주의가 가장 많은 353건(78.1%), 전기적 49건(10.8%), 기계적 7건(1.5%), 화학적 2건(0.4%), 미상 39건 (8.6%)이 발생했다.

-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주의 353건을 분석한 결과, 용접·절단·연마가 184건(52.1%)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, 다음으로 담배꽂초 69건(19.5%), 불씨·불꽃·화원방치가 54건(15.2%), 가연물 근접방치 21건(5.9%), 기타 부주의 8건(2.3%) 이었다.
 -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“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.”며, “특히 용접·용단 작업자 외 1명을 별도의 감독자로 지정하여 주변으로 비산되는 불티를 확인하는 것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.”고 밝혔다.

- 특히 용접·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▶용접·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, ▶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. ▶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
-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“건축공사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책임자 및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”며, “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용접·용단 등 작업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.”을 당부했다.